공직선거법위반 · 정치자금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, 2008.12.5, 2008고합1093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문국현

【검 사】 윤대해외 1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외 3인

【주문】

】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